

청구취지 변경신청서

사 건 2019재나50 기타(금전)

(담당재판부:제18민사부(다))

원 고 임 그 루

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-3 다세대주택 A동 103호

연락처 010-2878-2177

피 고 케이티 노동조합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

대표자 위원장 김 해 관

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변경합니다.

다 음

1. 청구취지변경의 내용

이 사건 처음 “서울행정법원 2006구합 43290 때의
”조합활동 피해자관련 취소결정 철회” 로 변경합니다.(갑 제4호증 참고)

☞. 이유는 같이 낸 답변서와 미리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.

2019. 11. .

재심원고 임 그 루

고등법원 귀중